

당첨자 서류검수 안내문

[노부모부양 특별공급]

□ 서류검수

- 제출기간 : 2022.12.08(목)~2022.12.11(일) 16:00까지 (4일간)
- 제출장소 :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견본주택 (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56-18번지 "두류역 서한포레스트" 견본주택)

■ 구비서류 (당첨자 검수일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접수하시기 바람.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	○	특별공급신청서, 서약서	청약자(본인)	* 견본주택 비치 -인터넷 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	○	특별공급확약서, 인터넷 청약동의서	청약자(본인)	* 견본주택 비치 -인터넷 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	○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	청약자(본인)	* 견본주택 비치
		○	청약통장 순위 (가입)확인서	청약자(본인)	•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(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) -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	○	신분증	청약자(본인)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※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)
	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(본인)	*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.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 (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)	청약자(본인)	*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. (※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장이 정하여 선정하므로 해당서류는 제출 제외) ※ 기록대조일: "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청약자(본인)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청약자(본인)	*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청약자(본인) 및 배우자	*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. • 이혼·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.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배우자	*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	○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배우자	*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복무확인서	청약자(본인)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-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, 2순위)의 청약자 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,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한 것으로 봄.	
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피부양 직계존비속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•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피부양 직계존속(3년이상 주소변동 사항) -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(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)
	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.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청약자(본인) 및 직계비속	•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 (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)	피부양 직계존비속	•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-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. ※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* 해외에 체류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* 만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* 만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제3자 대리인 (당첨자검수일/ 계약시) (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)	○		위임장	청약자(본인)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청약자(본인)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•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

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.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입주대상자의 자격검증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당첨자 서류검수 안내문

[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]



■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청약자 (본인)	*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청약자(본인) 및 세대원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 초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청약자(본인) 및 직계존속	•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직계존속	•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 (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)	배우자 및 세대원	•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생업, 학업 등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, •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. (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)